Korea Trade Review (Korea Trade Rev. ; 무역학회지)
Vol. 47, No. 5, October 2022 (pp. 201-221)
https://data.doi.or.kr/10.22659/KTRA.2022.47.5.201

貿易學會誌
ISSN 1226-2765 (Print)

인권보호 무역규범과 WTO협정의 관계-충돌과 조화 그리고 국내무역규범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김현철
관세법인패스윈 대표관세사/경영학박사

김학민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Protection Trade Norms and WTO Agreement-focused on Conflict and Harmonization and Development of Domestic Trade Norms

Hyun-Chul Kim[a], Hag-Min Kim[b]
[a]PASSWIN Customs Service Inc., South Korea
[b]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Kyung Hee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08 October 2022, Revised 27 October 2022, Accepted 30 October 2022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a harmonious approach between trade norm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WTO agreements is increasingly necessary and important. conflicts and harmonization that may occur between major human rights protection trade norms and WTO agreements were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hard legaliz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ch as human rights protection, was in conflict with the WTO Agreement, which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s the currently expanding human rights protection trade norms reflect differences in the position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t was also pointed out that there may be disputes over WTO compatibility and distorted protectionism measures. Accordingly, the applicability of the general exceptions to Article 20 of the GATT were reviewed together, and Article 20(a) of GATT,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may differ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thus limitations were also considered. At the same time, When it is necessary to take regulatory measures such as prohibition of imports from a specific country for human rights protection, it was reviewed and proposed domestic trade norms revision.

Keywords: Human Rights Protection Trade Norms, WTO Agreements, Conflict of Norms, Norms, Harmonization, Institutional Harmonization
JEL Classifications: F16, F51, F55

* 이 논문은 2022년 8월 김현철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 재정리, 수정한 연구임.

[a] First Author, E-mail: ccc@passwin.kr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edoctor@khu.ac.kr

ⓒ 2022 The Korea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Ⅰ. 서론

본 논문은 인권보호 무역규범과 WTO 협정의 충돌과 조화적 관계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공급망 위기관리, 미 · 중 통상 분쟁, 신흥국 임금상승으로 인한 오프쇼어링(off-shoring) 효익 감소, 각국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확대 등과 맞물려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보호의 중요성으로 환경과 통상의 연계가 강화되고, 미 · 중의 통상 분쟁은 인권 보호를 둘러싼 분쟁으로 확대되었다.

그동안 이러한 환경 · 노동 · 인권과 같은 주제는 일반적으로 기업 윤리라는 범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으로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BOTTOM-UP 방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혁신으로 대두되며, ESG경영이 기업가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동안 이익 중심의 경제적 관점에서 인권 및 환경보호 등 교역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범 · 가치 중심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ESG 경영이 기업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TOP-DOWN 방식의 규범화를 통해 통상환경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새로운 형태의 '비무역적 사안(NON-TRADE ISSUES)과 무역을 연계'하는 통상정책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탄소국경조정매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 논의와 같은 환경과 무역의 연계, 노동에 따른 부가가치를 연계하여 특혜 원산지 판정 및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USMCA 원산지 규정이나 UN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한-EU FTA 분쟁에서의 노동과 무역의 연계 등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역'의 일환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무역 관련 이슈 중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Environmental Issue)의 경우에는 환경과 무역 · 통상을 어떻게 연계하고 규범화할 것인지에 대한 국내외적 연구 · 논의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하여 무역 · 통상과의 연계 및 규범화에 대한 연구 및 논의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권보호에 대한 해결책은 각 국가가 처한 상황과 제도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규범화되며, 이들 상호 간에는 서로 영향을 미치며 제도적인 중첩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인 중첩은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해석 및 적용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된 제품이 국경을 넘어올 때 인권보호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제도적 노력은 상호간 충돌할 수 있다.

미국, EU 등 서방 선진국들이 중국 신장지역의 인권 침해 · 강제 노역을 통한 생산품(면화, 폴리실리콘 등)의 수입금지 정책을 펼치고,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불매운동 등)이 펼쳐지는 등 新냉전에 가까운 국제 정세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FTA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및 노동 관련 규정의 집행 강화와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공급망 실사 법안 준비를 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통상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인권보호와 관련된 미래 통상환경 변화 및 이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인권보호 무역규범에 대한 방향성을 WTO협정과 관련 규범 간의 관계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더 나아가 이들 간에 발생하는 충돌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조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자유무역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WTO협정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인권보호 무역규범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 이에 각각의 고유 영역이 존중되면서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규범조화적(norm-harmonized) 접근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며 인권보호 무역규범의 확대에 따른 국내 무역규범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인권보호 무역규범과 WTO 협정의 관계를 제도적 조화이론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들의

Table 1. Type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Trade Norms

Institutional Reconciliation		Relationship with WTO Agreements	Human Rights Protection Trade Norms Case
Institutional Nesting	Nested creation	When importance is placed on free trade, but the existing system, the WTO, is not adequate to deal with human rights issues (protection) and it is useful to create a new system	FTA TSD or Labor Chapter
	Nested adaptation	To link trad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by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norm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within the provisions of the WTO	1. US CBP WRO 2. Korea Customs Law Article 69 No. 2, Adjusted Customs First Priority
Institutional Parallel	Parallel creation	If the need for human rights protection is so serious that it places more importance than the existing issues (free trade) and the benefits of the existing system (WTO) are small, a separate human rights protection trade norm is established.	1. Kimberly Process Certification Scheme 2.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3.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Section 1502) 4. EU 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Parallel adaptation	If protection of human rights is of high relative importance to existing issues (free trade) and the benefits of the existing system (WTO) are large in dealing with new issues, create a separate rule to govern new issues within the existing system (WTO) or change the existing system Link the two issues by revising or revising	Discussion on New Amendments to Human Rights Protection Exceptions in the WTO Agreement

연계방안을 고려하여 4개의 연구 쟁점들을 제시한다. 제 III장에서는 제시된 각각의 연구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제 IV장에서는 향후 필요한 국내 무역규범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V장에서는 결론 및 연구의 시사점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인권보호 무역규범과 WTO협정의 관계

1. 제도적 조화 이론에 따른 인권보호 무역규범 유형화

1) 제도적 조화 이론

사회가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도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규범과 질서를 배제한 새로운 규범 또는 제도를 창설하는 것은 제도 간의 충돌로 인한 혼란을 야기시킨다. 또한 기존의 규범과 질서를 수호하는 국가들의 동의를 얻기도 어려울 수 있다. 즉, 인권보호 무역규범과 WTO협정의 충돌을 피하고 양 규범(제도)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거나 발전할 때에는 제도적 논리 간 상충 또는 기존 제도와의 충돌을 피하고 제도적 조화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규범 간의 위계가 정립되어야만 한다.

국가가 새로운 규범이나 제도를 수립할 때, 기존 제도적 질서 내에 새로운 규범이나 제도를 내포시킬 것인지(nesting), 아니면 기존 제도적 질서 밖에 새롭게 기존과 대등한 규범이나 제도를 만들 것인지(parallel)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기존 제도의 수정이나 개조(modify

or adapt)를 통해 새로운 규범이나 제도를 수용할 것인지, 새로운 이슈와 관련된 완전히 새로운 규범이나 제도를 창조(create)한 후 기존의 제도와 조화를 시킬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Aggarwal, 1998). 이러한 Aggarwal의 제도적 조화 이론은 인권보호 무역규범과 WTO협정의 관계를 정리하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권보호 무역규범의 유형 및 각 추가 대응방안 수립에 좋은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2) 인권보호 무역규범 유형화

국제사회의 변화와 함께 통상과 인권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인권보호 무역규범을 제도적 조화 이론에 따라 정리하고 유형화하면 〈Table 1〉과 같다.

기존 이슈(자유무역)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고 기존 제도(WTO)의 이점도 크며 새로운 제도 창설 거래비용이 큰 경우에는 기존 제도(WTO)의 수정 없이 새로운 제도를 수용한다(Nested adaptation). 이러한 경우, 인권보호를 위한 규범들을 WTO의 규정 내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 및 적용함으로써 무역과 인권보호를 연계하려고 하는 것이다.

기존 이슈(자유무역)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지만 기존 제도(WTO)의 이점이 작으며 새로운 제도 창설에 따른 거래비용이 작은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를 창설한 후 기존의 제도(WTO)에 내포시킨다(Nested creation). 즉, 자유무역에 중요도를 두되 기존 제도인 WTO가 인권문제(보호)를 다루기에 적절치 않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유용한 경우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과 같은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 내에 인권보호 등의 가치를 담은 지속가능발전 챕터를 규정하고 이행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양자를 연계시킨다.

새로운 이슈(인권 보호)가 기존 이슈(자유무역)에 대해 상대적 중요도가 높으면서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데 기존 제도(WTO)의 이점이 큰 경우에는 기존 제도(WTO) 내에 새로운 이슈를 관할하는 별도의 규칙을 만들거나 기존 제도를 개정 또는 수정하여 두 이슈를 연계할 것이다(Parallel adaptation). 이는 인권보호라는 더 중요한 새로운 이슈를 다루기 위해 기존의 WTO 제도를 수정하는 것이다. 즉, 기존 제도상 부족한 인권보호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수정 및 보완하여 이를 통해 기존 WTO 제도를 보다 더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반면, 인권보호라는 새로운 이슈의 중요도가 기존 이슈(자유무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기존 제도(WTO)의 이점도 작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슈에 더 가치를 부여하여 기존과 별개의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자 할 것이다(Parallel creation). 이는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심각하여 기존 이슈(자유무역)보다 더 중요성을 두며 기존 제도(WTO)의 이점도 작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권보호 무역규범을 창설하는 것이다.

2. 인권보호 무역규범과 WTO협정의 충돌과 조화

WTO(GATT)로 대표되는 국제무역규범의 국제무역질서의 원칙들은 광범위하다. 자유롭고 무차별적인 무역을 지향하는 기본 원리(원칙)는 자유주의(liberalism)로 대표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규범은 비차별원칙(무차별원칙)과 다자주의로 압축된다.

그러나 자유무역을 지향한다는 현재의 WTO(GATT)는 19세기의 자유무역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즉, 현재의 국제무역규범인 20세기 중반(1947년)에 나타난 GATT 체제는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되 특정한 상황 하에서 개별 국가의 시장 개입을 정당화하고 무역 제한(예외)를 인정하는 embedded liberalism(배태적 자유주의 또는 내재적 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즉, 전통적 또는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와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졌고 '내재된 자유주의'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배태적 또는 내재적 자유주의에 따라 인정된 예외규정이 인권보호 필요성에 따른 무역 제한 조치에 원용 가능할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무역규범화된 여러 인권

보호 조치가 WTO 무역체계와 충돌이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해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원칙,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원칙, GATT 제20조 일반예외 조항, GATT 제25조 5항의 의무면제 조항의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1) 기존 WTO협정을 통한 인권보호 무역규범의 제도적 조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규범으로 환경분야의 국제조약인 다자간 환경협정(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 MEA)과 WTO협정 간의 충돌에 대한 이슈가 오랜기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MEA는 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 상품에 대한 무역관련 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들이 WTO 협정과 충돌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최혜국대우 원칙, 내국민대우 원칙과 같은 중요한 WTO의 기본원칙(비차별 원칙)과의 충돌이 자리잡고 있다. 지금까지도 WTO협정과 MEA 간의 조화 방식에 대한 국가 간 대립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환경보호규범과 WTO협정의 조화 사례에서와 같이 인권보호 무역규범과 WTO협정의 조화는 WTO의 비차별 원칙에 대한 예외 인정, 즉 GATT 제20조의 해석과 적용에 따라 그 정당성의 인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듯 WTO협정(GATT)의 해석을 통해 인권보호 무역규범의 제도적 조화를 이루려는 상황을 연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 쟁점을 설정하였다.

> 연구 쟁점 1 :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의 유연한 해석과 적용을 통한 Nested adaptation 방식의 제도적 조화 사례는 제도 적용에 대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2) 새로운 FTA협정을 통한 인권보호 무역규범의 제도적 조화

2011년에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시작으로 EU가 체결한 모든 FTA에는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SD)' Chapter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후 TSD Chapter는 EU가 체결하는 새로운 FTA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이러한 TSD Chapter는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및 환경 기준의 저하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듯 FTA협정을 통해 인권보호 무역규범을 창설하여 제도적 조화를 이루는 상황을 연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 쟁점을 설정하였다.

> 연구 쟁점 2 : FTA 협정 내 'TSD Chapter' 또는 '노동 Chapter'를 규정하는 Nested creation 방식의 인권보호 무역규범은 제도적 충돌 없는 조화 방식으로서 향후 더욱 확대될 것이며, 무역협정상 규범의 집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3) 새로운 인권보호 무역규범 창설과 WTO협정의 제도적 조화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심각하여 별도의 새로운 인권보호 무역규범을 창설하는 경우, 이는 기존의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WTO 규범과 제도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WTO와 제도적 조화가 필요하다.

일례로, 2003년 5월 WTO는 회원국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 분쟁 다이아몬드(피의 다이아몬드)의 거래를 금지하는 '킴벌리 프로세스 협약'을 탄생시켰다. GATT 제25조 중 WAIVER 제도 즉, 의무면제 조항을 통한 것이다. 이는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제한조치는 일방 당사국의 의지만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 다수의 동의를 받는 WTO협정과의 제도적 조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렇듯 WTO협정과 별도로 인권보호 무역규범을 창설하는 경우, 규제 근거와 방식에 따라 제도적 조화 및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연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 쟁점을 설정하였다.

> 연구 쟁점 3 : Parallel creation 조화방식 중 UN 안보리 의결 (GATT 제21조 안보 예외) 없는 일방 당사국의 직접적인 수입 규제조치인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은 WTO협정과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다.

연구 쟁점 4 : Parallel creation 조화방식 중 공급망 실사를 통한 간접적인 무역규제 효과를 담보받는 인권보호 무역규범은 WTO협정과 충돌 없는 제도적 조화 방식으로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Ⅲ. 인권보호 무역규범과 WTO협정의 조화 고찰

1. 기존 WTO협정을 통한 인권보호 무역규범의 제도적 조화

인권보호를 위한 규범들을 WTO의 규정 내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 및 적용함으로써 무역과 인권보호를 연계하려고 하는 Nested adaptation 방식의 제도적 조화 접근은 WTO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따라 그 정당성 인정 여부가 달라지며 제도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연구 쟁점 1 :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의 유연한 해석과 적용을 통한 Nested adaptation 방식의 제도적 조화 사례는 제도 적용에 대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1) 미국 CBP의 수입규제(WRO)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미국 기업 및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강제노동 생산제품에 대한 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저가 제품의 유입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내 불공정 거래 및 자국의 시장 경쟁력 약화가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는 2020년 7월 중국 신장지역 위구르족과 무슬림 인구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지역 관련 기업 등에 경제적 · 법적 규제를 경고하였다.

CBP는 미국 관세법을 근거로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하고 있으며, 이때 ILO의 지표를 활용하여 강제 · 아동노동 등 인권 침해를 통해 생산된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거나 해당제품을 압류한다(19 U.S.C. §1307). 현재, CBP는 중국을 포함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 등 10여개국을 대상으로 WRO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신장지역 생산물품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마찰이 심하다. 해당 제재 기업의 생산품 뿐만 아니라 중간재 및 완제품에 이르는 공급망상의 관련 제품 모두가 해당될 수 있기에 그 영향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SIS)에 따르면 신장지역은 폴리실리콘의 최대 생산지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중국은 폴리실리콘 전세계 생산량의 82%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신장산은 50%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러한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 반도체 원료로 사용되기에 환경산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재료이다. 이에 관련 생산품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CBP의 WRO조치는 미국 내 수입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급망 속에 있는 여러 기업들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해당 수입물품이 강제노동 또는 아동노동 등 인권침해에 의해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자는 CBP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폐기 또는 국외 재수출 지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WRO 조치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되지 않았다는 원산지증명서와 기타 증빙을 제출해야만 한다. 이때 일반적인 원산지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미국 연방 행정규칙(19 C.F.R. § 12.43(a), (b))에 따라 정해진 외국인 판매업자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업자의 상세한 진술을 제공해야 한다.

2) 비차별원칙과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의 인정 여부

WTO협정의 기본 원칙인 비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은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즉, 비차별원칙에서 '차별'(discrimination)은 서로 '같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US CBP WRO and WTO Agreement

Comparison	Contents
Countries	China, Malaysia, Mexico, India etc.
Regulatory actions	Imports ban, seizure, return
Basis	US Customs Law and Federal Administrative Rules (19 C.F.R. § 12.43(a), (b))
Relationship with WTO Agreements	Need for GATT Article XX(a) General Exception Application & Possible Conflict of WTO Non-discrimination Rule

은' 두 대상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인데 WTO에서는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달리 '차등'(differentiation)은 서로 '다른' 대상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으로 WTO협정 위반으로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는 어떤 특정 상품이 '같은'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동종성'(likeness)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요소로 제기된다.

WTO협정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 원칙에 있어 '같은' 상품인지 즉, '동종상품'인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물리적 특성, 최종용도, 관세품목분류(HS CODE) 등을 기초로 판단한다. 내국민대우 원칙의 경우에도 이유 유사하게 판단하며,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인지를 추가로 검토한다. 현재까지 동종성 판단의 주된 해석기준으로는 'BTA 접근법(1970년 국경과세조정에관한보고 BTA Report에서 기술된 요소를 근거로 판정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종상품(final products)이 아닌,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 and Product Methods: PPMs)에 근거하여 상품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취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최종상품 기준으로는 동일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적 즉, 중국이나 미얀마에서 발생한 인권탄압을 통해 생산된 제품에 대해 PPMs에 기초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GATT 제20조는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공중도덕의 보호를 위한 조치나 인간의 생명 보호 및 건강의 보호를 위한 조치, 수형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과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는 GATT 규범의 예외로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제한 조치와 같은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GATT 제20조(a)에서는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여 도덕적 예외(moral exception)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형태로 구체적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다. 즉, 공중도덕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은 없는 것이다. 이렇듯 '공중도덕'이 명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제법상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공중도덕' 조항은 1923년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이 최소한의 공중도덕이라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 조항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제14조와 유사하다. GATS 제14조의 경우, '공중도덕'뿐 아니라 '공공질서'까지로 범위를 더 넓히고 있으며 GATT의 '공중도덕'과 GATS의 '공중질서' 모두 인권보호를 위해 원용될 수 있다. 이는 Gambling and Betting Service 사건(WTO DS285, 2005.4.20.)의 WTO 패널과 상소기구에서 모두 인정된 것이다. 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GATT 제20조(a)의 공중도덕을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나치게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비판도 있다.

과거 미국과 EU가 미얀마 인권침해(로힝야족 학살 및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제재를 하였는데 이 조치가 WTO협정의 기본 원칙인 비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과 양립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미국이 중국 신장 등 인권침해 생산물품에 대해 미국 관세법과 연방규칙을 근거로 취하고 있는 CBP의 WRO 또한 같은 이유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미얀마나 중국이 아직까지 미국의 무역제한 조치를 반박하고 WTO에 제소하지 않았기에 무역 분쟁화 되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현재 WTO 비차별원칙과 GATT 제20조(a) 공중도덕을 근거로 한 예외적용에 대한 직접적인 분쟁사례가 없기에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 즉,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GATT 제20조(a)에 대한 WTO 회원국 간의 적극적인 해석 합의 또는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더욱 직접적인 판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새로운 FTA협정을 통한 인권보호 무역규범의 제도적 조화

자유무역의 중요도를 유지함에도 WTO협정의 체계에서 인권보호의 가치를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 FTA의 협정 내에서 인권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새로운 인권보호 무역규범을 신설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는 'Nested creation (i.e, 내포적 신설의 의미) 방식'으로서 유효한 방식이라 고려된다.

> 연구 쟁점 2 : FTA 협정 내 'TSD Chapter' 또는 '노동 Chapter'를 규정하는 Nested creation 방식의 인권보호 무역규범은 제도적 충돌 없는 조화 방식으로서 향후 더욱 확대될 것이며, 무역협정상 규범의 집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1) 인권보호를 위한 FTA협정의 TSD 챕터 또는 노동 챕터

FTA협정은 WTO협정에서도 인정하는 지역무역협정의 하나로 궁극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WTO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WTO 다자 협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FTA협정을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여 경제적인 블록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FTA협정은 과거 상품무역에만 국한되었다가 서비스, 투자, 무역기술장벽, 경제협력 등 다양한 내용으로 점차 그 범위를 넓혀 체결되고 있다. 이 방식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고 FTA를 활용하여 이행하는 측면에서 매우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최근에는 FTA 협정 내 환경·노동 및 지속가능발전 주제(범위)를 포함시킴으로써 인권보호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FTA협정을 통한 Nested creation 방식에 따른 조화 사례는 여러 FTA협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 효과로서 타국에 실질적인 제도적·규범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활용되고 있다.

환경이나 노동 및 인권 문제를 FTA에 연계한 최초의 무역협정은 1992년 체결된 미국·캐나다·멕시코 사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이다. NAFTA에는 각국의 환경 및 노동법 이행, 의무불이행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 당사국간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유럽연합도 FTA를 통해 환경이나 노동 및 인권 보호 목표를 추구하는 데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2011년에 발효된 한-EU FTA를 시작으로 EU가 체결한 모든 FTA에는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SD)' Chapter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후 TSD Chapter는 EU가 체결하는 새로운 FTA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2) FTA협정을 통한 인권보호 무역규범 확대 및 무역 협정상 집행 강화

EU는 이러한 TSD Chapter를 근거로 한-EU FTA의 발효 이후 오랫동안 한국이 ILO 핵심협약(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4대 분야 총 8대 협약)의 비준과 관련하여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고 2018년 12월 17일에 이행과 관련한 양 당사국 간 협의 절차 개시를 한국에 공식 요청했다. EU가 FTA TSD Chapter상의 분쟁해결절차를

Table 3. Current Status of TSD or Labor Chapter in FTAs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FTA	Effective Date	TSD Chapter or Labor Chapter	Notes
Korea-Chile FTA	2004.4.1	not available	-
Korea-Singapore FTA	2006.3.2	not available	-
Korea-EFTA FTA	2006.9.1	not available	-
Korea-ASEAN FTA	2007.6.1. (different dates by countries)	not available	-
Korea-India EPA	2010.1.1	not available	-
Korea - EU FTA	2011.7.1	Chapter 13,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Korea-Peru FTA	2011.8.1	Chapter 18, Labor	-
Korea-US FTA	2012.3.15	Chapter 19, Labor	-
Korea-Turkey FTA	2013.5.1	Chapter 5,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Korea-Australia FTA	2014.12.12	Chapter 17, Labor	-
Korea-Canada FTA	2015.1.1	Chapter 18, Labor	-
Korea-China FTA	2015.12.20	not available	with social country
Korea-New Zealand FTA	2015.12.20	Chapter 15, Labor	-
Korea-Vietnam FTA	2015.12.20	not available	with social country
Korea-Columbia FTA	2016.7.15	Chapter 16,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Korea-Central America FTA	2019.10.1. (different dates by countries)	Chapter 16, Labor	-
Korea-UK FTA	2021.1.1	Chapter 13,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RCEP	2022.1.1. (different dates by countries)	not available	including social country

개시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FTA규정에 따라 90일간 양자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EU측은 2019년 7월 4일 분쟁해결제도 두 번째 단계인 전문가패널 소집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ILO 핵심협약 중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의 국회 비준을 하였고, 해당 협약들은 2022년 4월 20일 발효되었다. 그동안 4개 협약에 대해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6개국이며, 제105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은 국내 형벌체계 개정이 필요하기에 추후 비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추가하여 이러한 FTA 분쟁해결 및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의무 준수를 강제하려는 현상은 EU뿐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인권보호 무역규범 사례는 아니나 환경 관련하여 우리나라 선박의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이하 IUU어업) 위반행위에 대해 미국 국가해양수산청이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고, 미국이 2019년 9월 19일 한 · 미FTA 제20장 환경챕터에 근거하여 한국에 환경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미국은 우리 「원양산업발전법」상 벌칙규정에 행정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IUU 어업에 대한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동법 개정에 착수하였으며, 개정안은 2019년 11월 26일에 최종 공포되었다.

EU가 FTA를 통해 우리나라에 ILO핵심협약 비준의 압박을 가했던 것과 같이 EU가 체결하는 여타 국가와의 FTA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접근이 계속되고 있다. 2020년 8월 1일 발효된 EVFTA(EU-VIETNAM FTA)에도 TSD Chapter를 규정하였다. 공산국가인 베트남에게 EU 요구사항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강제노동 금지협약(제105호)' 등과 같은 ILO의 규정을 받아들이도록 한 것은 한마디로 EU는 'EU의 가치'를 담은 FTA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한국과 EU간의 FTA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EU가 여러 국가들과 체결하는 FTA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FTA TSD · 노동 규범은 우리나라에도 향후 중요한 통상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EU는 2019년 12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der Leyen) 신임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를 새로이 출범시켰고, 통상감찰관(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 CTEO)직을 신설하여 EU가 체결한 무역협정 내 환경과 노동 관련 규범의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FTA협정을 통한 인권 보호 이행 담보방식(TSD Chapter)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미 FTA협정은 물론 협정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CPTPP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노동 Chapter가 도입된 상태이다. 이렇듯 핵심 노동기준에 대한 심각하고 지속적인 침해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기에 EU 및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핵심 인권으로 강조하고 FTA협정을 통해 이를 이루려는 것이다.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FTA는 2019년 개정을 통해 자동차 등의 관세양허와 원산지 등 규범을 수정했으나, CPTPP나 USMCA와 비교해 인권, 기후변화, 디지털무역 등 新통상 영역의 최신 규범을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 NAFTA에서 USMCA로 협정 개정이 이루어진 바와 같이, 한-미 FTA에서도 미국은 언제든 新통상의제에 대한 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의 논의를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였는데, 핵심사안으로 다루어질 新통상의제에 대해 미국의 계획을 청취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2022년 3월 1일 '2022년 통상정책의제(Trade Policy Agenda)'를 발표했는데, '근로자(강제노동 및 인권), 환경, 불평등 해소' 등을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향후 미국의 무역협정 파트너에게도 '미국의 기준(American standards)'의 적용을 요구하거나 공동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자유무역의 WTO협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WTO협정에서 예외로 인정한 FTA협정을 통해 새로운 규정(TSD Chapter 또는 노동 Chapter)을 신설한 후 기존 제도인 WTO협정에 내포시켜(Nested creation) 인권보호와 WTO협정의 조화를 시키는 통상정책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는 효율적인 제도 조화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계속 강화될 것이다.

3. 새로운 인권보호 무역규범 창설과 WTO협정의 제도적 조화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경우, 국가들은 새로운 제도 창설 비용이 크더라도 인권보호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권보호 무역규범을 창설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인권보호 무역규범은 수출입 규제 관련 조치를 규정하게 되며 이는 규제방식에 따라 WTO협정과 상충될 가능성 및 무역마찰 가능성을 내재하게 된다.

1) 킴벌리 프로세스와 미국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

연구 쟁점 3 : Parallel creation 조화방식 중 UN 안보리 의결 (GATT 제21조 안보 예외) 없는 일방 당사국의 직접적인 수입규제 조치인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은 WTO협정과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새롭게 창설된 직접적인 수입규제는 2002년 11월 출범된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y Process Certification Scheme)와 2022년 6월 시행된 미국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이 있다.

GATT 제21조는 안보상의 예외와 관련된 것으로 제21조(c)는 UN 헌장에 따른 무역제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UN 헌장에 따른 무역제재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인권 유린과 분쟁 다이아몬드 규제'인 컴벌리 프로세스이다.

앙골라, DR 콩고, 시에라리온 등 남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질 좋은 다이아몬드가 무기 구입 등 전쟁 자금원으로 쓰이면서 '분쟁 다이아몬드(Conflict Diamonds)'의 통제가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분쟁 다이아몬드'에 대해 UN은 국제적 사회에서 인정한 정통정부의 타도를 목표로 군사 활동을 전개하는 무장 세력에 의해 산출되어 군사 활동의 자금원으로 이용된 다이아몬드(원석)라고 정의한다. 이런 분쟁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이 무장 세력에 편입되어 전투에 투입되거나 군사 자금 모집을 위한 다이아몬드 채굴에 노예와 같은 악조건으로 다이아몬드 채굴 수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많은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기에 '분쟁 다이아몬드'는 '피의 다이아몬드(Blood Diamonds)'라고도 불리운다.

이에 UN은 남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다이아몬드의 거래금지를 권고하는 총회 결의안(Resolution 55/56, 2000년 12월)을 채택하였다. '분쟁 다이아몬드(원석)'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국제적인 인증제도의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정부, 기업, NGO는 협상을 통해 2002년 11월 킴벌리 프로세스 인증 체계(Kimberly Process Certification Scheme, 킴벌리 프로세스)를 출범시켰고 분쟁지역 다이아몬드의 불법 유통을 규제하였다.

킴벌리 프로세스 가입국은 다이아몬드 원석 거래시 '분쟁 다이아몬드' 거래의 근절을 목적으로 Kimberley Process Certificate(다이아몬드의 원산지 증명서, KPC)를 첨부해야 하며, KPC가 첨부되지 않은 다이아몬드의 유통은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킴벌리 프로세스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로의 다이아몬드 수출도 금지하고 있다.

2022년 2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85개 국가(EU 27개국을 1개 참가국으로 고려시, 59개 참가국)가 킴벌리 프로세스의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전세계 다이아몬드 원석의 99.8%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킴벌리 프로세스는 최초로 공급망에 대한 인증을 통해 다이아몬드 원석의 원산지를 체크하는 협의체 및 인증 체계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UN은 남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다이아몬드의 거래를 금지하였고 '킴벌리 프로세스 인증 체계'가 출범하였다. 따라서 각 WTO 회원국은 GATT 제21조(c)를 적용하여 킴벌리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않는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무역규제 조치를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는 2003년 회원국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GATT 제25조 5항에 따른 의무면제(Waiver)로 킴벌리 프로세스에 따른 무역규제 조치를 인정하였다. WTO 체제 내에서 인정받은 최초의 공식적인 인권보호 무역규범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GATT 제21조(c)의 적용을 통한 인권보호 형식이 아닌 GATT 제25조 5항의 적용을 통한 의무면제가 반드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태이다.

킴벌리 프로세스와 WTO협정과의 조화 방식은 GATT 제21조(c)의 일반적 예외적용이 적정

Table 4. Comparison between Kimberly Process and US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Process and Act	Institutional Nested Creation	Basis of international Law	Relationship with WTO Agreement	Notes
Kimberly Process	Parallel creation	UN Security Council Decision	GATT Article 25, exemption	Applied to all countries participating in Kimberly Process
US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not existing	High possibility of conflicts lack of WTO Agreement	Applied to specific country (to China Xinjiang Uyghur)

한지, GATT 제25조 5항의 의무면제의 적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WTO협정의 수정 없이 새로운 인권보호 규범을 수용한 Parallel creation 방식에 따른 조화로써 회원국들이 수용하기에 적합한 제도 조화 방식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2021년 12월 23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제정, 2022년 6월 발효된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은 중국 신장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전제하고, 미국 관세법 307조에 의거하여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다고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장지역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방지법'은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의 원칙'에 따른다. 즉 관련 상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측에서 '이것은 위구르족 강제노동 제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지법'은 생산 과정에서 신장의 원료, 반제품,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제품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사 공급망에서 신장 지역과 관련된 모든 요인을 능동적으로 배제해야만 한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EU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강제노동 방지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미국과 같은 독자적인 수입 규제에는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EU가 미국과 같은 정책을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도입하는 경우, EU 내 강제 노동 대비 차별적인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교역 상대국들의 반발 및 WTO 규정을 위반할 위험성도 존재함을 고려하는 것이다. 만약 수입 금지 조치를 추진한다면 특정 지역에 관계 없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모든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신장지역의 인구는 2,600만명이며 몇몇 제품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태양광 패널 업체들은 신장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들로부터 폴리실리콘을 공급받는다. 신장지역에는 세계 5대 폴리실리콘 공장 중 4개가 소재하고 있다. 신장산 면화는 세계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중국은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면화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다.

2)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 법안(도드-프랭크법)과 EU의 공급망 실사 법안

연구 쟁점 4 : Parallel creation 조화방식 중 공급망 실사를 통한 간접적인 무역 규제 효과를 담보받는 인권보호 무역규범은 WTO협정과 충돌 없는 제도적 조화방식으로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UN안보리 의결 없는 또는 WTO협정에 의해 의무면제를 받지 않은 수입규제 조치는 기존의 WTO협정과 제도적 충돌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이에 직접적인 수입금지 규제조치보다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인원 침해 행위를 방지하도록 강제하는 전면적인 실사 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공급망 실사를 통한 인권보

호 무역규범은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도드-프랭크법)법안과 EU의 공급망 실사 법안이 대표적이다.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이란 내전을 겪고 있는 콩고, 르완다, 우간다 등을 포함하는 10개국(중부 아프리카 소재 DR콩고,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잠비아, 앙골라)의 분쟁지역에서 노동력 착취 등 인권유린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생산 및 유통되는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의미한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권을 보호하고자 분쟁광물을 규제하였으며 이는 확대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아래에서 기업의 분쟁광물을 사용한 영리활동을 규제하여 무장단체 등의 자금원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분쟁광물은 휴대폰, 자동차, 전자의료기기, 반도체 등 현대산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에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한 것이다.

미국은 2010년 '도드-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1502조에서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의 공급사슬(supply chain)에 대해 인권 침해 내용을 포함한 실사의무(due diligence)를 부과하고 있다. 도드-프랭크법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드러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개혁법이지만 법의 제정과정에서 제1502조가 삽입되었고 분쟁광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공급망에 있어 자신들이 이용한 광물이 분쟁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강제(법적 규제)함으로써 여러 가지 인권침해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는 정보공개를 통해 공급망에서 기업의 인권책임을 법제도화한 사례이며, 글로벌하게 엮여 있는 현재의 공급망 속에서 간접적으로 무역규범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인 것이다.

제1502조는 인권실사를 법적 의무로서 부과한 세계 최초의 입법으로써 기업에게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 또는 완화할 적극적인 역할을 부과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글로벌 기업의 부품 공급망이 해외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구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이러한 규제는 법의 역외적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된다. 해당 규정은 미국 국내가 아닌 분쟁지역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할 목적을 갖고 있지만 법형식으로는 미국내 구매자 입장에 있는 기업에 대해 법적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법의 역외적 적용에 따른 주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법은 분쟁광물의 사용 여부와 그 원산지를 공시할 것을 요구할 뿐이고 기업에 직접적으로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에게 확대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적어도 기업이 반인류적인 행위나 거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권 보호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한 적절한 제도적 조화 사례가 되는 것이다.

UN, OECD, ILO와 같은 국제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책임경영을 위한 국제원칙과 실사지침을 채택하였으나 기업에 구속력을 갖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지해왔다. EU 집행위원회의 연구(공급망을 통한 실사 조건에 관한 연구, 2020)에 따르면, 조사 기업의 37%만이 인권과 환경에 대한 기업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인권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일부 EU회원국들은 기업실사를 의무화한 국내법(안)을 개별적으로 수립하기도 하였다. 특히 프랑스는 2017년부터 기업실사를 의무화하는 국내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독일은 각각 2022년, 2023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은 기업의 인권 전반에 대한 기업실사를 의무화했으나, 네덜란드는 아동노동에 한정한 기업실사를 의무화하는 등 적용기준 및 실사 범위 등에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2021년 3월 EU 의회는 '기업실사 및 기업책임에 관한 지침안'에 대한 결의를 하였으며,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내에 기업실사 의무화를 다루는 법안을 발표할 예정에 있다. EU 차원의 기업실사 의무화는 보다 일관되고 포괄적인 법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해당 법안은 실사 수행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실사 범위

Table 5. Conflict Minerals Regulations in US and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in EU

Acts	Harmonization	Export and Import Sanctions	Relationship with WTO Agreement
US Conflict Minerals Regulations (Dodd-Frank Act)	Parallel creation	Indirect human rights protection by reporting for due diligence without export or import sanctions	not applicable
EU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는 지리적 위치에 상관하지 않고 기업의 자사 사업장과 공급망을 포함한다. EU 차원의 기업 실사 의무화가 진행될 경우 EU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EU 역외에서 생산·매입하는 중간재 또는 완성품에 대해서도 기업실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입 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업실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가치사슬에 대한 mapping(지도화), 공급·협력 업체명과 지역, 상품·서비스의 종류 그리고 인권 위험을 예방 및 종료하기 위한 실사절차 수립 등도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EU의 공급망 실사법안은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법과 같이 공급망 내에서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서 기업에게 확대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반인권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인권보호 무역규범이다. 이와 별도로 EU에서 탈퇴한 영국은 2015년에 이미 기업 활동 또는 공급망에서 노예나 인신매매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담은 연례보고서의 발간을 요구하는 '현대 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공급망 내의 인권보호 침해 여부에 대한 실사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인권보호를 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은 기존 WTO협정과 충돌 없는 제도적 조화 방식으로 평가되며,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미국과 EU외 일본도 2022년 내에 공급망 내의 인권침해 리스크를 조사 및 예방하는 기업실사 의무화 법제를 준비하고 있다. 2021년 11월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ESG 공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출범시키면서 ESG 공시기준 통합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 국내에서는 2025년부터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인권 침해에 대한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국제적인 인권보호 무역규범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Ⅴ. 인권보호 무역규범 확대에 따른 국내 무역규범 발전방안

인권보호 무역규범이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외적 입법 흐름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세계 통상 질서의 개편은 우리로 하여금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 요청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음을 고려하게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국내의 무역규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관련 제도의 정비와 함께 우리가 견지해야할 입장 정리 및 수출입당사자에 대한 보호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Table 6. Article 5 Proposal of Korean Foreign Trade Law (Restrictions on Trade and other Special Measures)

Current	Amendment Proposal
Article 5 Restrictions on Trade and other Special Measures: When there occurs any event or cause set forth in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ay place a restriction or ban on the exportation and importation of goods, etc., under condi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4. skipped 5. When it is necessary for protecting and conserving life, health, and safety of people, and life and health of animals and plants as well as the environment and domestic resources.	Article 5 Restrictions on Trade and other Special Measures: When there occurs any event or cause set forth in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ay place a restriction or ban on the exportation and importation of goods, etc., under condi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4. skipped 5. When it is necessary for protecting and conserving life, health, safety of people or human rights protection, and life and health of animals and plants as well as the environment and domestic resources.

1. 대외무역법 무역제한 규정상 인권보호 명문화 개정

향후 인권보호 등을 위해 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금지 등 규제 조치가 필요할 경우, 대외무역법 제5조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대외무역법 제5조에서는 "제4호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5호 인간의 생명·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대외무역법 제5조 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를 제정하여 킴벌리 프로세스에 의한 무역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고시 제6조는 특별조치의 내용으로서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수입을 금지한다.", "회원국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원국으로부터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대 회원국에서 발행한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가 수입하는 다이아몬드 원석과 함께 동봉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다."와 같은 규정을 두어 인권보호를 위한 분쟁 다이아몬드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인권보호 수출입 제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5조 제5호에 따라 수출입 제한 및 금지를 할 수 있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규정이 없어 집행은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인간의 생명·건강 및 안전"이라는 문구를 인권보호에 원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이는 흡사 WTO 협정에 있어 GATT 제20조(a)의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규정을 인권보호에 원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유사하다. 물론 "공중도덕"이라는 표현보다는 대외무역법상의 "인간의 생명·건강 및 안전"이라는 표현이 인권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므로 논란은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 관련 조치의 경우에는 "환경보전 또는 국내자원보호"라는 명확한 단어를 사용한 것처럼 "인간의 생명·건강 및 안전 또는 인권보호"로 개정하는 것이 추후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필

Table 7. Article 69 Proposal of Customs Act (Adjustment Duties)

Current	Amendment Proposal
Article 69 (Goods Subject to Adjusted Dutie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customs duties may be assessed within the limit of the rate calculated by aggregating the rate obtained by deducting the basic tariff rate of the relevant goods from 100/100 to the basic tariff rate: Provided, That where the difference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prices of agricultural, forest, livestock and marine products or other goods manufactured using such products as their raw materials exceeds the customs value of the relevant goods, customs duties may be assessed within the limit of the rate equivalent to the difference between such domestic and foreign prices 1. skipped 2. Where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ity and the life and health of humans, animals and plants, preserve the environment, conserve limited natural resources, and to assure international peace, security, etc. 3~4. skipped	Article 69 (Goods Subject to Adjusted Dutie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customs duties may be assessed within the limit of the rate calculated by aggregating the rate obtained by deducting the basic tariff rate of the relevant goods from 100/100 to the basic tariff rate: Provided, That where the difference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prices of agricultural, forest, livestock and marine products or other goods manufactured using such products as their raw materials exceeds the customs value of the relevant goods, customs duties may be assessed within the limit of the rate equivalent to the difference between such domestic and foreign prices 1. skipped 2. Where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ity or human rights, and the life and health of humans, animals and plants, preserve the environment, conserve limited natural resources, and to assure international peace, security, etc. 3~4. skipped

요하다고 보인다.

2. 인권 보호를 위한 조정관세 1순위 부과대상 명확화

한국 관세법에서는 “공중도덕 보호, 인간 · 동물 · 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유한(有限)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 보복관세 · 긴급관세 등과 같이 관세율 적용 1순위로 하여 최우선 관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관세법 개정 취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로 규정된 공중도덕 ·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관세법상 조정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 조치한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춘 적절한 조치라 평가된다. 다만, 아직까지 인권보호 등을 위해 조정관세가 부과된 적이 없어 해당 조정관세 부과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미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ATT 제20조(a) 도덕적 예외(moral exception)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WTO협정의 기본 원칙인 비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에 따라 서로 ‘같은’ 두 대상을 다르게 대우하여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면 이는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 즉, 최종상품 기준으로는 동일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인권탄압을 통해 생산된 제품에 대해 PPMs에 기초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GATT 제20조에 따른 예외 가능 인정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정당성을 떠나 WTO회원국으로부터의 규범 합치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Fig. 1. US Special Certifate of Origin for Specified Labor Class Exclusion

Certificate of Origin

I, _____, foreign seller or owner of the merchandise hereinafter described, certify that such merchandise, consisting of _____ (Quantity) of _____ (Description) in _____ (Number and kind of packages) bearing the following marks and numbers _____ was mined, produced, or manufactured by _____ (Name) at or near _____, and was laden on board _____ (Carrier to the United States) at _____ (Place of lading) (Place of final departure from country of exportation) which departed from on _____; (Date); and that _____ (Class of labor specified in finding) was not employed in any stage of the mining, production, or manufacture of the merchandise or of any component thereof.

Dated _____

(Signature)

Source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9.

이에 WTO 차원에서 동종성 판단기준으로서 상품 무관련 PPMs를 도입하여 공정 중 발생한 인권침해를 근거로 한 추가 관세 부과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GATT 제20조(a)를 "공중도덕 또는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명확히 개정하거나 또는 GATT 제20조(k)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신설하고 우리나라 조정관세 1순위 부과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대상 규정도 함께 개정하여 이에 명확한 법적 근거 부여 및 집행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인권보호와 관련된 대외무역법상 특별 원산지증명제도 도입

향후 인권보호 등을 위해 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금지 등 규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거나 인권 보호를 위한 관세법 조정관세 1순위 부과 이슈가 있는 경우, 수입자는 공급망 상에서 인권보호 침해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 부대적인 입증서류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연방규칙(19 C.F.R. § 12.43(a))에 상기 〈Fig. 1〉과 같은 강제 노동 관련 특별 원산지증명서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CBP에 의해 강제 노동 관련 WRO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이러한 특별 원산지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외무역법 또는 관세법에 공정상 인권 침해(강제 노동 등)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외무역법이 관세 상의 혜택과 무관한 비특혜원산지에 대한 기본법이기 때문에 대외무역법과 관련 하위 법령에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사전적으로 해당 법 집행을 위한 특별 원산지증명서 서식(양식)을 구비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된 공급망 실사 보고서에 대한 인정범위 등에 대해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4. 인권침해 물품 재수출 등에 따른 관세환급규정 개정

수출한 물품이 인권침해 문제로 인해 수입국 세관으로부터 통관 보류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문제가 실무적

Table 8. Article 106 Amendment Proposal of Customs Act (Refund of Customs Duties on Goods Different from Contract Terms)

Current	Amendment Proposal
Article 106 (Refund of Customs Duties on Goods Different from Contract Terms) (1) Where the goods whose import declaration is accepted are different from the terms of a contract, and the nature or form thereof as at the time of the import declaration remain unchanged, the customs duties thereon shall be refunded if they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the import declaration thereon is accepted: 1. Goods imported from any foreign country: They must be re-exported after having been placed in a bonded area (when permission is obtained from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pursuant to Article 156 (1), the permitted place shall be included;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In such cases, such goods may be exported after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the import declaration thereon is accepted; 2. Goods produced in a bonded factory: They must be brought back to the bonded factory. 3. and others, skipped.	Article 106 (Refund of Customs Duties on Goods Different from Contract Terms) (1) Where the goods whose import declaration is accepted are different from the terms of a contract, or are not compliant with social as well as ethical value like human rights violation and the nature or form thereof as at the time of the import declaration remain unchanged, the customs duties thereon shall be refunded if they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the import declaration thereon is accepted: 1. Goods imported from any foreign country: They must be re-exported after having been placed in a bonded area (when permission is obtained from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pursuant to Article 156 (1), the permitted place shall be included;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In such cases, such goods may be exported after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the import declaration thereon is accepted; 2. Goods produced in a bonded factory: They must be brought back to the bonded factory. 3. and others, skipped.

으로 중요하게 발생한다. 통관적인 처리 뿐 아니라 관세적인 부담 부분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수출한 제품이 인권침해 문제로 인해 현지 통관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다면 해당 물품을 한국으로 재수입할 수 있고 관세법상의 재수입면세 제도를 적용하여 관세 부담 없이 국내 재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이 당초 해외로부터 수입했던 외형적으로 정상적인 물품을 국내에서의 사용·소비 없이 원상태로 보관하다가 인권침해 물품으로 사후적 판단을 받아 당초 수출국으로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세인 최초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현행 규정상 수입한 물품이 당초 계약과 다른 물품인 경우(계약 상이)에 대해서만 관세환급(위약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권침해 물품이 계약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계약상이 수출통관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후속조치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품질이나 가격, 수량, 인도조건 등에 대해서만 계약상 명기를 하기 때문에 생산 공정상 인권침해를 하여 사회·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계약과 다른 물품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경우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기존과 달라진 국제통상 환경을 감안하고 재수입면세제도와의 형평성 및 경제적 피해를 안게 될 선의의 수입업체를 고려하여 계약상이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의 범위를 좀 더 넓혀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부득이 계약상이 수출이 불가능해 국내 보세구역에서 폐기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 물품에 대한 계약 위반을 물리적인 요소로만 판단하지 않고 생산공정에서의 사회·윤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관세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한 인권보호 무역규범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제도적 조화 이론을 토대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보호 무역규범이 글로벌 무역시스템인 WTO협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적 조화 이론을 토대로 인권보호 무역규범을 유형화하고 각각의 조화 상황을 검증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WTO협정을 통한 인권보호 무역규범(Nested adaptation 방식)의 제도적 조화, FTA협정을 통한 인권보호 무역규범(Nested creation 방식)의 제도적 조화, 인권보호 무역규범 창설(Parallel Creation 방식)과 WTO협정의 제도적 조화 각각의 실효성과 제도적 충돌 가능성을 파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첫째 특정국가가 도입한 인권보호 무역규범의 정당성 인정을 위해 GATT 제20조(a)의 일반적 예외 규정에 대한 회원국의 적극적 해석에 대한 동의와 이에 대한 판례 누적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FTA협정이 인권보호 및 강제노동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무역규범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셋째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지대하여 별도의 직접적인 인권보호 무역규범을 창설하는 경우라도 WTO협정상의 의무 면제와 같은 회원국 간의 동의가 있어야 정당성 인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넷째 인권실사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인권보호를 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한 것에 의의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한 인권침해 물품 등 비윤리적 물품에 대한 통상 및 무역분야에서의 관심을 유도하였고 관련된 법규상 또는 국제규칙상의 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으며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기업 및 통상정책 담당자들에게 제공하는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통상에서 인권 이슈가 중요한 가치로 주목받음에 따라 과거 선택적 사항 또는 이미지 개선사항으로써 취급받던 친(親)인권 정책이 관련 이해관계자의 공익을 추구하는 필(必)인권 정책으로써 필수적인 기업 생존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과거 자발적 Bottom-up 방식의 인권보호 규범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Top-down 방식의 실질적인 규제 및 제도화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이는 인터넷 및 SNS를 통한 소비자의 기업 평판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공정 및 준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양하게 높아지고 있음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둘째, 세계 각국에서 입법화 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인권책임에 대한 요구는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회가 기업에 요구하는 바가 달라진 만큼 이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인권 보호(CSR 및 ESG 평가) 요구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계약해지 및 납품 불가 등 여러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더욱 큰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인권침해 물품의 수출입거래에 따른 매도인·매수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 정립이나 당사자간의 계약서 반영, 그리고 이를 통한 권리 구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추가하여 본 연구는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통상환경 속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있어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첫째,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권보호 무역규범이 생겨나고 있고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국내외적 입법 흐름은 향후에도 지속되고 강화될 전망이다. 향후, 미국과 EU 등으로부터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 요청도 있을 수 있기에 현재 미비되어 있는 관련 제도의 정비와 함께 우리가 견지해야할 입장 정리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였다. 둘째, 미국과 EU 등 서방세계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의 디커플링 흐름 속에서 우리 정책담당자가 취해야할 방향성에 대한 참고도 될 수 있다고 본다. 과거 경제적인 실익을 최우선시 했던 Global Value Chain 시대에서 벗어난 현재의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누구도 부정하거나 비난할 수 없는 규범·가치 중심으로 제도 및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규범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면서 규범·가치 중심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셋째, 무역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과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전세계적 복지추구와 같은 목적은 인권 존중과 같은 사회적 가치규범을 무시하고는 추구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인권보호 무역규범의 제정 및 집행과 맞물려 수출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 우리나라 무역규범이 갖고 있는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References

Abbott, F. M. (2003), “The ‘Rule of Reason’and the Right to Health: Integrating Human Rights and Competition Principles in the Context of TRIPS”.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trade*, 279-290.

Aggarwal, V. K. (1998). “Reconciling multiple institutions: Bargaining, linkages, and nesting”, *Institutional designs for a complex world: Bargaining, linkages, and nesting*, 1-31.

Ahn, Keon-Hyung (2020). “A Study on Due Dilige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in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SCM)”,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21(3), 91-116.

Ahn, Keon-Hyung. , JOE, In-Ho (2020), “Recent RBC(Responsible Business Conduct) and BHR(Business Human Right) Cases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Its Implications”,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88(), 223-243.

Ahn, Keon-Hyung. , JOE, In-Ho and KWON, Hee-Hwan (2017), “International Legislative Trend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and its Implications on Policy”,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75(), 199-224.

Ajmani, M., Joshi, P. K., Kishore, A., and Roy, D. (2018). “How Did Sanctions Impact Myanmar?”, *The Diplomat*, 6.

Bae, Yeon-jae (2021), “Analysis of Labor Provisions of Korea’s FTAs and Labor Dispute under the Korea-EU FTA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19(2), 35-74.

Bhala, R. (2020), “China’s Uyghurs, Human Rights, and America’s Trade Sanctions”, *Journal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19. 1-21

Han, Jung-Hyun (2021), “Competition and Coexistence of International Trade Norms and Environmental Norms: Focusing on the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Review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30(1), 141-169.

Harrison, J., Barbu, M., Campling, L., Richardson, B., and Smith, A. (2019), “Governing labour standards through free trade agreements: Limits of the European Union's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s. JCM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57(2), 260-277.

Jeong, Eun-Ju (2018), “Reflection on the State`s Positive Duty to Protect after the Endorsement of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Sogang Law Journal*, 7(1), 83-112.

Kang, A. R., (2021).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e EU Parliament's Business Due Diligence Directive* (Issue Paper, Vol. 4 No. 32), KIEP World Economy Focus, 1-15.

Kim, Eun-Chae., Pak, Myong-sop (2000), “A Study on Social Standards under the WTO ; ethical and economical aspects”, *Korea Trade Review*, 25(3), 403-424.

Kim, Byung-Jun (2013),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Assessment on the Normalis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58(2), 183-220.

Kim, Byung-Tae (2016), “Corporate Disclosure Regulations of the Use of ‘Conflict Minerals’ and Their Legal Implications”, *BUSINESS LAW REVIEW*, 30(3), 217-247.

Kwon, Hyun-Ho (2013), “Interpretation of “Likeness” in the WTO Law”, *LAW REVIEW*, 54(3), 107-132.

Lee, C. K., Lee, J., Park, H., and Kang, Y. D. (2020). New High Standard for Environmental and Labour Provisions in Ftas: Law and Economic Perspectives). KIEP Research Paper, 20-30.

Lee, Joo-yun (2008), “Connecting International Trade and Human Rights - Under the WTO System -”, *LAW REVIEW*, 18(3), 433-458.

Lee, Sang-Soo (2016). “Legal Approach to Human Rights Abuses Committed in Supply Chains ― Section 1502 of Dodd-Frank Act (2010)”, *Seoul Law Journal*, 57(3), 135-169.

Lovely, M. E., and Schott, J. J. (2021). “*Can China blunt the impact of new US economic sanctions?*,” Policy Briefs PB21-13,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Marceau, G. (2002), “WTO dispute settlement and human right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3(4), 753-814.

Park, Jung-Won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Human Rights : With Special Emphasis upon the Norm- Harmonized Perspective”, *Han Yang Law Review*, 43(), 183-207.

Powell, S. J. (2004). “The Place of Human Rights Law in World Trade Organization Rules”, *Fla. J. Int'l L.*, 16, 219-230.

Seo, Sang-hyun (2009), “Natural Recourse and Conflict : A case of Democratic of Republic of Congo”,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African Studies*, 29(), 183-210.

Seo, Sang-Hyun (2010). A Study on African Human Right.As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27), 59-84.